

## 1. 개정(제정)이유

특히 개방·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을 규정하고, 비정상 출원 방지를 위해 개인·면제자 출원의 감면을 제한하며,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에 따라 공지예외주장 보완수수료를 산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청구항수 기준 심판청구료 징수 위임근거 마련, 국가 공동출원시 평균감면율 적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무상실시 개방특허 특허료 감면제도 도입(안 제7조)

특허권자가 특허 무상실시를 선언하고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특허 무상실시를 허용한 경우 특허료 50% 감면

나. 비정상 출원 방지를 위한 감면 제한 도입(안 제7조)

1) 개인의 연간 감면건수 상한을 20건으로 설정

2) 전액면제자가 청구항 30항 초과 출원시 심사청구료 부과

다. 공지예외주장 보완수수료 신설(안 제2조, 제3조)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는 경우 수수료를 우선권주장 추가료와 동일 수준(전자문서 18,000원/서면 20,000원)으로 산정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대상 명칭 변경(안 제7조)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인 의료급여 및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수수료 면제

마. 기타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안 제2조, 제3  
조, 제4조, 제7조)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청구시 청구항 수·디자인 수·상품류 수 기  
준 심판청구료 산정 위임근거 마련
- 2) 평균감면율 적용 대상에 국가에 속하는 출원을 한 자 포함
-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심사등록출원 변경 재심사보정시 1디  
자인마다 8만9천원 징수근거 마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특허출원의 공지예외주장 보완료

가. 공지예외주장 보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 보완  
마다 1만8천원

나. 공지예외주장 보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 보완  
마다 2만원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예외주장 보완료

가. 공지예외주장 보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 보완  
마다 1만8천원

나. 공지예외주장 보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 보완  
다 2만원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8만9천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 중 “2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27만원”을 “27만원으로 하고,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며”를 “제외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법」 제8조에 따른 실용

신안등록출원에서 1 출원에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7조제2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초과시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초과시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해 「특허법」 제102조(「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락한다는 의사를 표시(이하 “공개청약”이라 한다)한 특허권자 또는 등록실용신안권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개청약에 따라 무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계약을 체결한 통상실시권자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포함될 것. 다만 해당 통상실시권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허권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특허법」 제18조(「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그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

3. 감면을 받으려는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연도분의 연도에 해당하는 전 기간이 통상실시권 설정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7조제6항(중전의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허법」 제83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제7조제7항제3호 중 “또는 제4항”을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권리설정등록시”를 “권리설정등록시·연차등록료납부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5항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감면 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청약에 따른 특허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적용한다.











8. ~ 13. (생략)

② (생략)

③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4만원 <단서 신설>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6만원 <단서 신설>

2. ~ 11. (생략)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생략)

③ 「상표법」 제3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

8.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가. -----  
-----  
----- . 다만, 디자인 수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나. -----  
-----  
----- . 다만, 디자인 수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2.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가. -----  
-----

마다 24만원. 다만,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26만원. 다만,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7만원

2. ~ 11. (생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  
-----  
-----  
-----  
-----25만원으로 하고,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나. -----  
-----  
-----.  
-----  
-----  
-----  
-----27만원으로 하고,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2. ~ 11. (현행과 같음)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  
-----  
-----  
-----  
-----  
-----





9. (생략)

③·④ (생략)

<신설>

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초과시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해 「특허법」 제102조(「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락한다는 의사를 표시(이하 “공개청약”이라 한다)한 특허권자 또는 등록실용신안권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개청약에 따라 무상 통상 실시권 설정의 계약을 체결한 통상실시권자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포함될 것. 다만 해당 통상실시권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허권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특허법」 제118조(「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그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

3. 감면을 받으려는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연도분의 연도에 해당하는 전 기간이 통상실시권 설정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

⑥ -----  
-----  
-----  
-----  
-----







다.